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6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재해 발생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하천점용료 중 재해 발생 시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재해 발생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하천법 제37조에 하천관리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입법예고('20. 5. 28.~'20. 6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,

재해 발생 시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「하천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